

대 법 원  
제 2 부  
판 결

2001. 4. 24. 판결선고	인
2001. 4. 24. 원본영수	

사 건 2001다9076 보험금  
원고, 상고인 및 부대피상고인

1. 김○○  
서울 마포구 ○○

원고, 상고인 2. 이○○  
서울 양천구 ○○  
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홍준

피고,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 
○○ 주식회사  
서울 종로구 ○○  
대표이사 김○○  
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우식

원 심 판 결 서울지방법원 2000. 12. 26. 선고 2000나16403 판결

주 문

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

상고 및 부대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.

## 이 유

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
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,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 2 소정의 소액사건으로서,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고이유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인바, 원고와 부대상고인이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사유는 위 법조에서 정한 어느 불복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.

그러므로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, 상고 및 부대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2001. 4. 24.

재판장      대법관      이용우 \_\_\_\_\_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대법관      조무제 \_\_\_\_\_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대법관      강신욱 \_\_\_\_\_

주   심      대법관      이강국 \_\_\_\_\_